

유럽의 정보통신 시험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관습 동향분석

A Study on the Product Certification Practices in the Field of Voluntary Standards in Europe

김영태(Y. T. Kim) 표준체계연구실 선임연구원
박기식(K. S. Park) 표준체계연구실 책임연구원, 실장

본고는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BC-IT 226 도큐먼트 중 D9를 분석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유럽 역내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부문에서의 시험인증제도가 갖는 유사점을 비롯하여 시험인증제도의 상이함때문에 조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정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 서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992년 5월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역내의 세부 운영규정을 정립하고자, CEN(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 유럽 표준화 위원회)¹⁾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했다.

CEN은 그 일환으로 유럽의 시험인증 전담 기구인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산하기구인 ECITC(European Committee for IT&T Testing and Certification)와의 공동협력으로 “CEN-ECITC Project Team 1”²⁾

이라는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실무반을 만들어 관련 연구활동에 전념하게 했다.

그 결과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BC-IT(Bundled Command - Information Technology) 226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유럽 역내의 통신시장 통합을 위해 회원국의 기존 표준화 관련 규격을 제한하고 정보통신표준화의 총괄적 접근을 위한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기본정책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1, 2].

특히, BC-IT 226 중 D9는 작업팀 B/4 & 5³⁾에서 <표 1>과 같은 일정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작

1) EU와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대표로 구성되며, 유럽 표준화에서 국가표준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함.

2)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총 16개의 분야별로 작업팀(A/1, A/2, B/1, ... F/1 등)이 운영되었음.

3) “IT & T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IT & T 시험 형태 및 인증 형태 정의, 그리고 각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기준 및 절차 설정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업 수행방법은 역내의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제도를 어떻게 조화(harmonization)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정보통신의 자발적(표준) 및 강제적(기술기준) 부문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인증제도 구축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표 1〉 BC-IT 226 D9의 작업 추진 일정

| 일시 | 주요 사항 |
|--------------|--|
| 1994. 7. 4. | D9의 내용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수렴용 관련 문서 초안 발행 |
| 1994. 7. 13. | 첫 D9 도큐먼트 발행 |
| 1994. 10. 3. | ECITC 배포 및 의견 수렴용 D9 도큐먼트 재발행 |
| 1995. 1. 16. | ECITC 승인후 최종적인 D9 도큐먼트 발행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발적 부문에서 유럽 역내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품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유사점을 비롯하여 시험인증제도의 상이함 때문에 조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정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1. 배경

BC-IT 226 D9 작업팀 B/4 & 5는 자발적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의 시험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관습을 파악하기 위해, 역내 국가의 인증기관(예, 영국의 BABT, 프랑스의 AFNOR 등)을 상대로 시험인증제도와 관련한 각종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D9 도큐먼트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세부적인 설문내용은 〈표 2〉와 같다[3].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BC-IT 226 D9를 작성하기 위한 B/4 & 5 작업팀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역내 국가들간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조화(기술적 및 행정적 차원)의 장벽 요인으로 지적했다.

- 1) 시험기관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추진 미진
- 2) 조화된 시험인증제도의 개발 및 실현시에는 인증기관의 업무의 양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경제적 제한 요소가 존재
- 3) 조화된 시험인증제도 정립을 위한 명확한 시장 요구조건의 부재
- 4) 조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장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인증기관을 인정하기 위한 조화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실질적인 인정에 대한 추진 경험 부족 등

아울러, 이 작업팀은 이러한 조화의 장벽요인이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또는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을 상호인정 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이 문제들의 점진적인 해결 방안으로 상호인정 추진 과정에서의 보다 투명한 운영 절차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 자발적 부문에서의 시험인증제도 운영 현황

유럽 역내의 각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부문의 시험인증제도 현황은 크게 5가지 사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가. 각기 다른 시험인증제도 운영

(표 2) 유럽 역내 국가들의 시험인증제도 관습조사를 위한 설문내용

| 주요 분야 | 세 부 내 용 |
|-----------------------------|---|
| 일반적인 인증기관 관련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의 활동 범위는(자발적, 강제적)? • 기구(조직)의 형태는(사설, 공공, 기타)? • 자발적 부문에서의 인증활동과 관련한 법/규정은? |
| 제품의 표준/규격에 관련 요구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인증제도에 포함하는 표준/규격에 대한 정책 여부? •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표준/규격에 대한 요구조건은? • 적합인증시 적용되는 제품의 표준/규격에 대한 기준은? (ISO, CEN 규정 등) • 제품의 표준/규격에 대한 요구조건 평가방법은? |
| 시험에 대한 요구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방법 및 도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 하나 이상의 시험방법 및 도구 허용 여부? • 제3자 시험 요구 여부? • 국내/국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시험성적서의 인정 여부? • 국내/국제 시험기관(예, 제1자/제2자/제3자 시험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시험성적서의 인정 여부? • EN 45001(시험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준) 등과 같은 기준에 부가하여 시험성적서에 관한 특정 요구조건은? • 각종 선택사항(예, 제도적 측면의 문제, 제조자 측면의 문제 등)을 갖는 표준/규격 처리방안은? |
| 제조자 선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 선언이 갖는 의미는? • 인증절차상 제조자 선언의 요구 여부? • 어떤 종류의 제조자 선언이 고려(시장개방 및 기타 용도)되고 있는가? • 제조자 선언에 관한 특정 요구조건은? |
|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마크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정 여부? • 인증서 또는 마크 사용 권한을 발행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은? • 제품 인증서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는? • 하나의 제품이 복수의 표준(ISO, CEN 등)에 의해 인증될 수 있는지 여부? • 시험인증절차의 시작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또한, 그 인증기준은? • 시험인증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인증기관이 신청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는? 또한, 그 사용 조건은? |
| 상호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종류의 상호인정을 원하는가? (예, 시험성적서, 마크 등) • 상호인정에 관한 요구조건은? • 상호인정에 대한 장벽은? • 인증서의 상호인정 여부는? • 상호인정에 대한 직접적인 추진 여부 또는 요구되는 부가적인 단계는? (예, 제3자 평가, 공통 견해 제시 등) • 상호인정협정(MRA)은 누가 승인하는가? |

역내의 각국들은 인증기관이 다른 시대 및 다른 환경하에서 설립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국의 통신시장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형태로 시험인증 제도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써, 각국이 어떤 인증된 제품에 대해 발행하는 인증

서(certificate)의 용어⁴⁾ 사용에 있어서 하나의 적용 분야에서도 각국은 여러가지 형태로 적용하고

4)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형식승인에 대한 적합인증서(Conformance Certificate for Type Certification), 형식검사 인증서(Type Examination Certificate), 적합인증서(Conformance Certificate), 형식시험에 기초한 적합성 마크(Mark of Conformity Based on Type Test) 등임.

있는 사실에서 국가간의 시험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4].

나. 시험성적서의 사용

시험성적서는 시험활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수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인증기관은 EN 45001 즉, 시험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다.

다. 제조자의 적합선언에 대한 사용

제조자의 적합선언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관이 아닌 제조자 스스로에게 주어진다. 또한, 이것은 시험인증제도의 한 과정으로 채택되기도 하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단순히 제조자의 적합선언만으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라. 제품 인증의 운영에 있어서 상이한 방법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제도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인 인증서 발급(경우에 따라서는 인증서 대신에 면허 또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내용 평가 및 각종 자료 정보의 평가 그리고 감사 보고서의 평가가 고려된다. 이때, 감사보고서 평가는 품질제도 평가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인증된 제품이나 품질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제조자는 이 사실을 인증기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같이 부여된다. 또한, 재시험 또는

인증 사실을 그대로 지속하기 위한 요구조건도 상황에 따라 각국은 달리 적용하고 있다.

마.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인증

유럽 역내의 몇몇 국가들은 유틸리티 프로그램 및 사무자동화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평가 및 인증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제기준의 ISO/IEC 9126(소프트웨어 패키지 평가 - 품질 특성 및 그 사용을 위한 지침)과 ISO/IEC DIS 12119(소프트웨어 패키지 - 품질 요구조건과 시험)을 사용한다. 또한, 정보보호 및 안전에 관련된 특정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3. 역내의 시험인증제도 비교를 통한 몇 가지 도출 사항

유럽 역내의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조화된 기준하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팀 B/4 & 5의 노력으로, 자발적 부문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시험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유사점 및 차이점 그리고 조화방안 등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유사점

- 1) 모든 역내 인증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신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국의 인증 신청서를 인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
- 2) 모든 인증기관은 유럽 표준인 EN 45000시리즈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시험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EN 45001의 기준을,

- 인증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EN 4500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
- 3) 단순히 시험에 기초한 인증 행위에서는 시험 성적서를 평가하고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시험과 품질 평가에 기초한 인증 행위에서는 시험성적서와 감사보고서를 평가하여 적합한 것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
 - 4) 인증절차가 시험과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인증된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인증된 제품이나 품질 제도에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제조자는 이 사실을 인증기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지속적인 품질 평가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시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 5) 인증절차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신청서, 각종 문의사항, 시험성적서 및 품질 평가시 적용되는 감사보고서 등이 있음.
 - 6) 모든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이 국제기준에 따라 지정되기를 바라며, 시험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자신이 시험성적서 등을 평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 7) 인증서의 오용에 대한 원칙으로는 인증서의 취소, 법적 조치 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 8) 이의제기 절차는 모든 역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
 - 9)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자의 적합선언을 요구하며 이를 인정한다는 것 등이 역내 국가들이 갖는 자발적 부문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유사점이다.

나. 차이점

- 1)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서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 각기 다르다는 것
- 2) 모든 인증기관은 시험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조건 및 시험기관에 관한 요구조건을 가지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는 것⁵⁾
- 3) 시험 선택의 검증 절차는 시험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조건과 시험기관에 관한 요구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 4) 시험성적서 평가는 지정된 전문가, 인증기관에 자문을 주는 특정 위원회, 인증기관 자체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것
- 5) 제품의 재시험에 요구되는 시간은 1~2년 또는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다는 것
- 6) 모든 인증기관은 제1차 시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 7) 시험인증 관련 법 또는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 등이 유럽 역내 국가들이 갖는 자발적 부문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차이점이다.

다. 제품 평가

제품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IMQ3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시험기관의 평가 전에 신청자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표준에 대한 적합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이 활동은 ISO/IEC

5) 요구조건 규정은 인정기구의 의무, 인증기관에 의한 설정, ECITC 협정그룹(뒤에서 별도 언급할 예정임) 등에 의한 시험협정 등에 따라 좌우됨.

9126과 ISO/IEC DIS 12119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라. 조화에 대한 장벽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조화(상호인정)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기본 요인으로서는 각 인증기관이 달리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의 형태(예, 형식 인증서(시험된 제품에게만 주어지는 인증서), 제품 인증서(형식 인증서보다 좀 더 포괄적 의미의 인증서), 면허 또는 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벽은 시험 협정그룹의 배타성과 ECITC 협정그룹⁶⁾ 조직내에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의 비 관여도 등을 꼽을 수 있다[5].

마. 조화방안

역내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조화된 기준에 관한 협정
- 2) 보다 긴밀한 협력과 신뢰성 구축
- 3) 서로간의 인증절차 검토
- 4) 절차의 조화방안 수립
- 5) 공통적인 견해⁷⁾ 반영
- 6)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또는 마크의 통일 등

6) ECITC 산하에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간의 의견 조정을 통한 시험인증제도 분야의 협력 및 조화 창출을 위해 각 분야별로 7개(예,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시험과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부문을 담당하는 ETCOM, 전자파간섭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EMCIT 등)의 협정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4. 바람직한 시험인증제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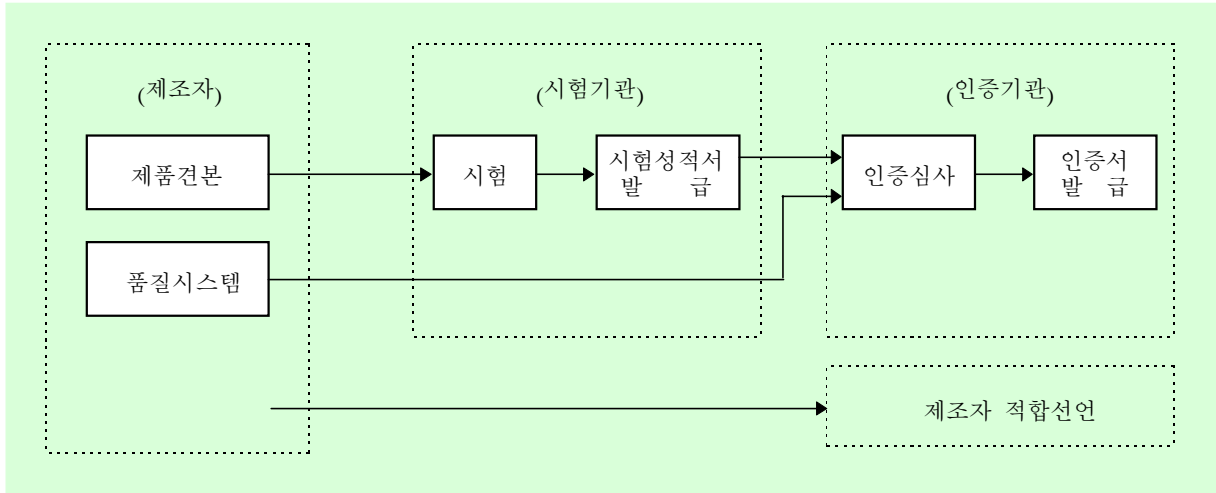
제품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조화를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작업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 1) 현행 각국의 상이한 시험인증제도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시험인증제도를 정립하는 방안
- 2) 현행 시험인증제도간의 조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고 차원의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
- 3) 시장력에 맡겨 두는 방안

여기에서, 새로운 시험인증제도의 정립방안은 최근 BC-IT 226의 창출과 함께 CEN-ECITC Project Team 1의 노력으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각각의 시험인증 절차는 관련기관간의 명확한 업무 영역 설정과 함께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6].

- 1) 제조자 적합선언 : 제조자가 직접 제품 및 품질시스템에 대해 적합하다는 보증문서를 작성(EN 45014의 규정을 따름)하며, 인증신청자는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이것을 첨부하여 제출함
- 2) 시험기관 : 협정그룹에 의해 정해진 조화된 서비스와 표준화된 시험규격으로 시험하여 조화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함

7) 시장의 견지에서 볼 때, 상호운용성 인증서,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인식, 명확한 용어 정립, 제품의 안정성 또는 적절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인정 등이 요구됨. 또한, 제조자의 견지에서 볼 때, 시험인증제도의 융통성, 시험성적서 및 인정기구의 상호인정, 어느 지역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마크, 인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지연 방지, 시험인증제도내에서 제조자의 적합선언 역할 정립 등이 요구됨.



(그림 1)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 운영체계

3) 인증기관: 협정그룹에 의해 정해진 조화된 규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제품건본 및 품질시스템에 대한 것) 후 조화된 인증서를 발급함

5. B/4 & 5 작업팀의 제안사항 분석

BC-IT 226 분야 중 자발적 부문에서 제품의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역내의 관습 조사가 주 임무인 B/4 & 5 작업팀은 역내의 조화스러운 시험인증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가. 작업의 연속성 보장

시험인증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융통성 개발을 포함한 시험인증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럽시험인증기구인 EOTC에 의한 제품 인증의 조화 작업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 분야의 인정

현재 역내에서는 인정기구간의 상호인정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증기관은 이러한 절차에서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인증기관간의 조화 활동을 통해 충분히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인증기관간의 상호인정에 대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잠재적인 장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 부문에서의 시험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시험인증기관은 반드시 제3자로 지정된 시험기관 체제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각 시험기관의 시험업무 도중에 발생할 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시험기관과의 공식적인 협정체결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인정기구는 인증기관에게 상호인정의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세부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B/2 및

B/3 작업팀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두 작업팀의 주요 업무 내용은 ;

- 1) IT & T 분야의 인증기구에 대한 인정절차 조화를 위한 B/2 작업팀의 경우
 - 가) IT & T 분야에서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간에 동등하게 상호 실행되기 위한 제도에 관한 EN 45012의 공통적인 해석 제공
 - 나) EAC(유럽인정위원회)와 상호 밀접한 조정관계 유지
 - 다) WELAC과 ECTRA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IT & T 분야의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절차 조화를 위한 B/3 작업팀의 경우
 - 가) B/1 작업팀⁸⁾하에서 개발된 도큐먼트에 기초하여 인정기구간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수행
 - 나) EAC와 상호 밀접한 조정관계 유지
 - 다) WELAC과 ECTRA과의 공조체제 유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시험방법의 검증

시험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립을 위해서는 인증기관과 시험기관간의 공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서 사용한 시험방법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대한 각

8) ECITC와 WELAC과의 작업 연장선에서 IT & T 분야의 시험기관 인정에 관한 조화된 도큐먼트 창출을 위한 EN 45001(시험기관의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EN 45002(시험기관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 기준)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함.

종 절차를 일관되게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증기관의 입장에서 볼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역내의 정보통신표준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CITC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산하에 10개의 협정그룹을 두어, 이 협정그룹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기관의 공통적인 시험방법 검증절차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러한 업무는 B/3 작업팀에 일임하여 업무의 진척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라. 조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조건

현재 역내 각국들은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제도의 조화를 위해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물론 이용자, 조달자, 제조업자 등 까지 포함하는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험인증제도의 조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시장에서의 요구조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반영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마. 제조자의 적합선언

인증기관은 제3자 시험에 의한 시험성적서 없이 제조자의 적합선언만으로는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조자의 적합선언은 현행 시험인증제도 범위내에서 적절히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조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제조자의 적합선언 사용에 대한 영향은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바. 자발적 부문에서의 제품인증에 대한 조화

현재 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발적 부문의 시험인증제도는 앞서서도 일부 언급되었지만, 오로지 제품의 견본에만 관련되어 제품이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시험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모든 제품에게 관련되어 이러한 제품이 관련 표준 등에 적합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제품인증(product certification) 등 2가지 제도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이중의 시험인증제도는 결합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부문에서 하나의 조화된 제품 인증제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요구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제적으로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BC-IT 226 D9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팀 B/4 & 5는 자발적 부문에서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제품의 시험인증제도가 역내·외 모든 국가들에게 범 접근(global approach)의 용이성을 가져야 하며, 제3자 인증과 제조자의 적합선언이 공존한 상태에서 운영되기 위한 그 방안 모색에 주력했다. 그 결과로, 역내 각국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험인증제도의 유사점, 차이점 및 시험인증제도간의 조화에 대한 장벽 요인 등을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인증업무를 관장하는 ECITC는 역내의 보다 한 단계 높은 시험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이 권고되고 있다[3].

- 1) 강제적인 기술기준 분야 처럼 유럽 공통 마크 및 국내의 조화된 마크(예, CEN 마크, CE 마크, Eurolabel 등) 사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
- 2) 상호운용성 시험후 합격한 제품들에 대한 인증서의 가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 3) ISO 9126, ISO DIS 12119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 및 평가 사항에 기초한 인증 및 평가 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BC-IT 226 D9 도큐먼트에서는 각국의 상이한 시험인증제도가 조화된 시험인증제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 비용 및 자원의 경제적 효과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험인증제도에 대한 세계 시장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자유교역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인정 문제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표준의 시험인증제도에 관한 한 과도기 상태에 처해 있는 유럽의 조화된 시험인증제도 정립 및 운영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될 것이며, 특히 조화된 시험인증제도에 의한 상호인정 추진정책 등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럽과의 상호인정(강제적인 기술기준 분야)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보다 관심있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박기식, "BC-IT 226 분석", TTA 정보통신표준화 시험인증연구위원회, '96년도 제1차 워크숍, pp. 68 - 81, 1996.7.
 [2] CEN-ECITC Project Team 1, Mandate BC-IT 226, "Final Results of Phase 1 Planning Tasks," Oct. 1992.

- [3] CEN-ECITC, BC-IT 226 D9, "Investig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Practices," Jan. 1995.
- [4] 박기식, 김영태 외,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인증제도 조사연구, TTA 시험인증제도 조사위원회, pp. 62 - 72, 1994.12.
- [5] EOTC, *Supporting European Quality Policies*, June 1995.
- [6] 김영태, 박기식, "유럽의 정보통신표준 시험인증제도 정립을 위한 CEN-ECITC Project Team 1의 활동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1권 제4호, 1996. 12.

주요 약어표

| | |
|--------|---|
| AFNOR | :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
| BABT | : 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 |
| BC-IT | : Bundled Command-Information Technology |
| CEN | : 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
| EAC | : European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
| ECITC | : European Committee for IT&T Testing and Certification |
| ECTRA | : European Committee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ies |
| EFTA |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 EMCIT | : European Testing of Electromagnetic Compatability of IT Products |
| EN | : European Norm |
| EOTC |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
| ETCOM | : European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Office and Manufacturing |
| EU | : European Union |
| IEC |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 ISO |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 IT & T | :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
| MRA |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 WELAC | : Western European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